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0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서삼석 · 朴芝源 · 조인철
송옥주 · 김성범 · 이개호
박용갑 · 문금주 · 이재관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유지를 위한 노동력 공급 부족,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업용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출어 포기 등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올해를 끝으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어업분야의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업무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회원조합 등에 전가되면서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

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라. 어업인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을 “2029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 ----- ----- ----- ----- <u>29년 12월 31일</u> ----- ----- ----- ----- -----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 ----- <u>12월 31일</u> ----- ----- ----- -----.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소득	③ ----- ----- ----- ----- <u>9년 12월 31일</u> -----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④ -----
--- 2029년 12월 31일 ---

-----.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
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 ⑦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illegible]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illegible]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②②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 · 5. (생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 ----- --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2029년 12월 31일----- ----- 4. · 5.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2029년 12월 31일----- -----
--	---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6</u> <u>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⑧ ----- ----- <u>2029</u> <u>년 12월 31일</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